

#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태용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0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장태용, 경기문, 김경훈,  
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 
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 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 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지, 도문열,  
박상혁, 박영한, 박춘선,  
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 
서준오, 송경택, 옥재은,  
유정인, 윤영희, 이민석,  
이민옥, 이봉준, 이상욱,  
이종태, 채수지, 최민규,  
최유희, 허 훈, 홍국표,  
황유정, 황철규 의원(41명)

## 1. 제안이유

- 고령운전자(65세 이상)의 비율은 '19년 10.2%(약 334만 명), '20년 11.1%(약 368만 명), '21년 11.9%(약 402만 명)로 해마다 점증하고 있으며,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'17년 25,713 건에서 '21년 31,841 건으로 증가하고 있음. 이에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'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'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1항).

나.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).

##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30만원 이내의 「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
2.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

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<u>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실태조사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<u>시장은 고령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30만원 이내의 「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</u></p> <p>2. <u>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</u></p>

4. (생략)

5. 공

(현행 제4호와 같음)